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년 11월 28일
- 나. 회부일자 : 2003년 11월 29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2003년 12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 7. 31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하였던 바
- 위원회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개별 위원회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조례가 21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개별 위원회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의원·공무원 참여제한, 위촉위원 서구의회 동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방법, 의결방법 등
- 통합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던 사항과 개별 조례의 특성을 살려 개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통합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는 집행부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①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위원회와 ②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3대 서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음..

통합조례의 제정은 ①각종 위원회에 의원참여 제한, ②위원 위촉시 의회동의, ③한 위원의 3개 위원회 참여 제한, ④여성위원 참여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도 있었지만 제정당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었고 운영해 본 결과 예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위원회에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임.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위원으로 단체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음.

둘째, 위원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는 80일로 한정되어 상시 개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동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셋째, 제3조 제1항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회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동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 위원회를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는 지적들이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본 조례의 개정 만으로는 이미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보다 합리적인 것은 통합조례 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있는 21개 위원회에 대하여 개별위원회의 특성상 의원참여가 꼭 필 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 비율을 보장함과 아울러 위 원회 중복참여의 제한 등을 개별 위원회 개정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당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됨.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 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별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